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

2023. 1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2021. 11. 30. (주)▣▣▣▣건설 ○○○와 계약하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 ○○읍 ▣▣리	교량 2개소 등	8,569	6,572	1,997	'21. 11. 30.	'21. 12. 1.~ '24. 12. 31.	(주)▣▣▣▣건설 ○○○	49%

1.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 및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군 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설계변경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말뚝 시공 및 공동보강 등의 사유로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심사를 받지 않았다.

[표 2] 설계변경 현황

(단위: 천 원)

공 사 명	사업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증감액 (최초계약대비)	증감률 (최초계약대비)	비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1. 12. 1.~ '24. 12. 31.	'21. 11. 30.	3,989,128			최초계약
		'23. 4. 18.	6,280,579	증2,291,451	증57.44%	1회 변경 (사후심사)
		'23. 8. 8.	6,572,374	증2,583,246	증64.76%	2회 변경 (미심사)

2. 장기계속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등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덧붙여 적고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¹⁾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1)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

되어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고,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총공사 등의 계약단가에 따르지 않은 채 아래 [표 3]과 같이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표 3] 차수별 계약 현황

(단위: 천 원)

공 사 명	사업기간	변경계약일자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변경내용	비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차 1회)	'21. 12. 1.~ '23. 1. 26.	'22. 12. 6.	1,048,000	1,131,400	C.G.S 주입 768.34m ³ 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차 1회)	'22. 4. 18.~ '23. 8. 11.	'22. 12. 12.	1,094,000	1,605,600	▣▣▣▣ 말뚝 천공 1,691m 등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2절에 따르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신기술·특허공법을 해당 공사에 적용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2. 11. 2.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설계변경 사전 협의를 하면서 합성PHC말뚝(□□□□ 말뚝, 특히 제§§-§§§§§§§§호)을 공사에 적용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후 적용하라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채 2022. 12. 7.부터 2022. 12. 23.까지 설계변경 심사 전 시공을 하였고, 2023. 2. 3. 사후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였다.

4. 공사원가 과다 계상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량 슬래브의 경우 합판거푸집(4회, 복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합판거푸집(3회, 보통)을 적용하여 6,131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해당 공사가 축중기 설치 대상²⁾ 건설공사가 아니며 감사일 현재까지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1,81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7,941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르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는 축중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계약원가 심사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천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	□□	진입도로 L=353m 교량1개소 L= 57.4m B=14.0m	3,413,138	2022.12.26.	2022. 12. 27. ~ 2024. 4. 30.	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에 계약심사 대상사업에는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사업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7조에 도 계약원가 심사 대상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군은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득하여 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비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계약원가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른 의견 등이 있는 때는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는 2022. 11. 29. 계약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설계 수정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표 2]와 같이 임의로 내역서의 수량, 단가 등을 변경하여 공사비 158,195천 원을 증액하고 2022. 11. 30. 공사 발주하여 원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2] 공사발주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원가심사 결과	발주금액	비 고
도 급 액	3,954,459	3,899,741	
관 급 액	971,346	1,184,259	
공 사 비	4,925,805	5,084,000	증158,195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